

노인학대 예방교육

요양보호사



www.j1389.or.kr



1511-1389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립목적

- 1) 학대받는 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 2)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상자별 교육
- 3)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
- 4) 안전한 노후를 위한 지지적 환경 조성

2. 노인보호전문기관 주요사업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서비스
-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

3. 노인학대의 이해



1)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복지법 제 1 조 2의 3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서적 ·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



3. 노인학대의 이해



2) 노인학대가 사회문제화 되어지는 이유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
-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 가치관 및 노인 부양의식의 변화
- 사회적 지원의 부족





3. 노인학대의 이해

「노인학대」 그 원인에 대해 한번 알아보까요??

노인학대는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쳐 발생하게 됩니다.



구 분	학대 발생 요인
개인적 특성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코올 중독, 무기력감 등
<u>노인의 의존성</u>	<u>노인의 장애, 질병, 치매 등</u>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 · 정신장애,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등
<u>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u>	<u>부양자의 신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 부양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등</u>
가정 환경적 요인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
세대 간 학대의 전이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 노부모를 학대하는 행위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





4. 노인학대현황-전라남도인구현황



■ 전라남도 노인인구 현황

전체인구: 1,938,690명

65세이상: 338,692명

비율: 17.5%

■ 전라남도 서부권 고령화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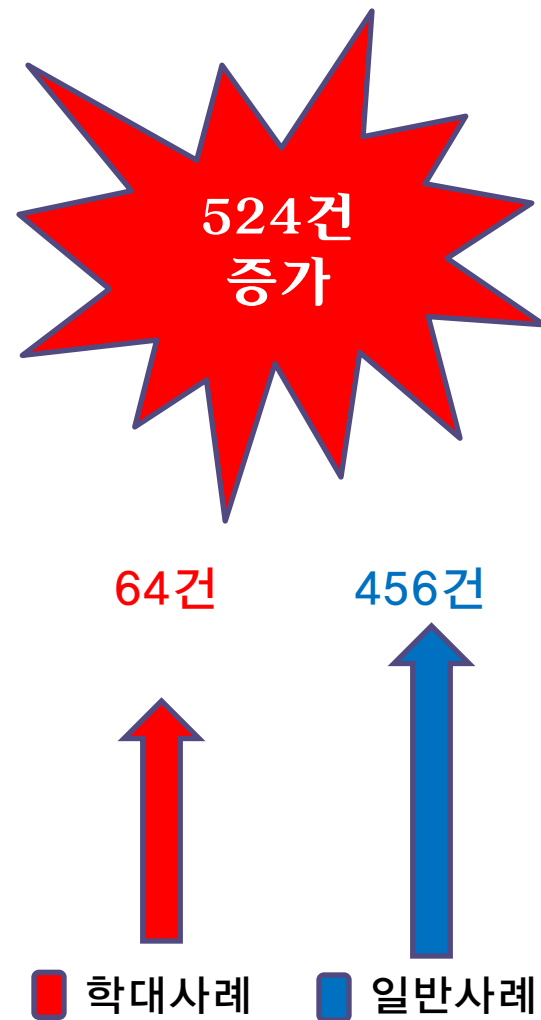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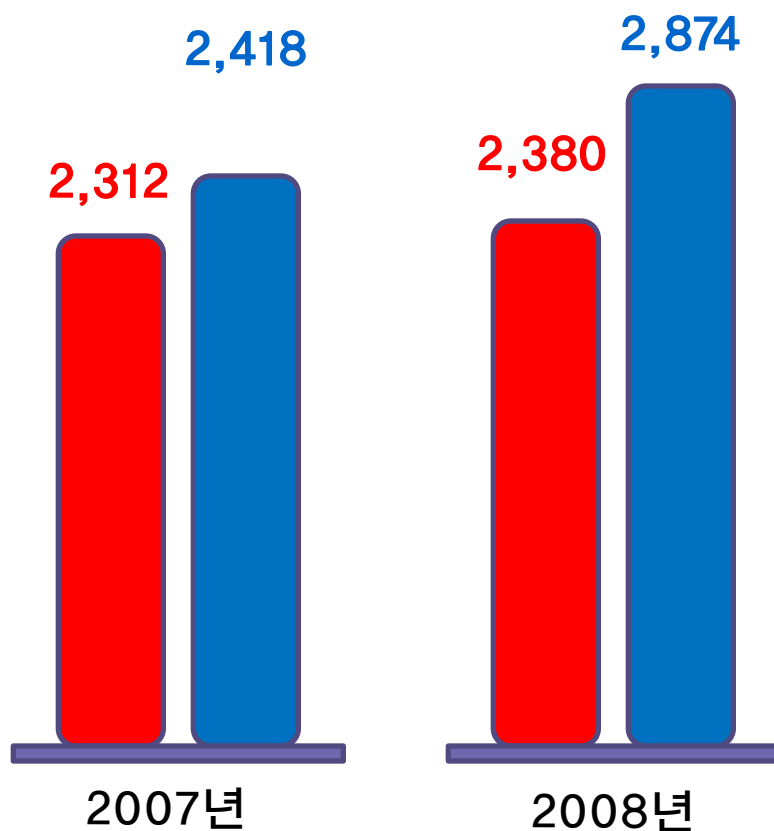
전라남도서부권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19%로 차지





4. 노인학대의 현황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출처:2008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현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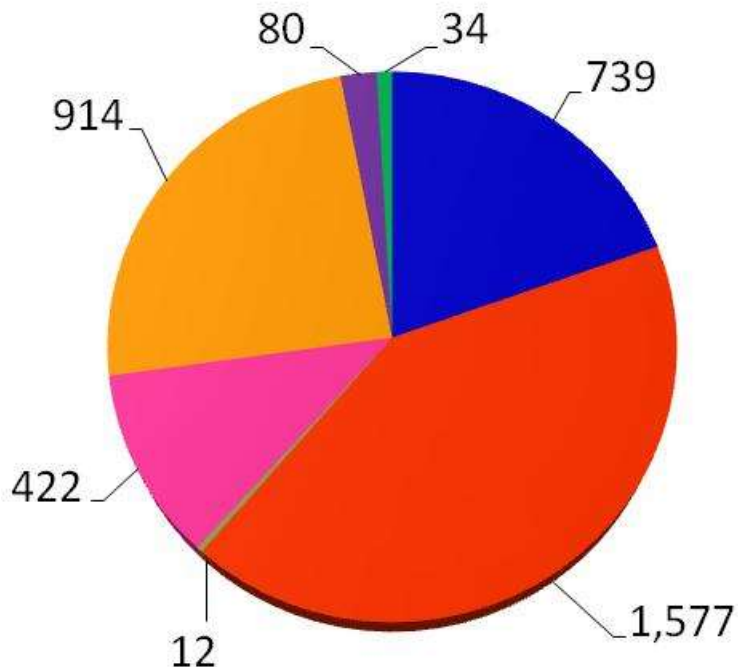


4. 노인학대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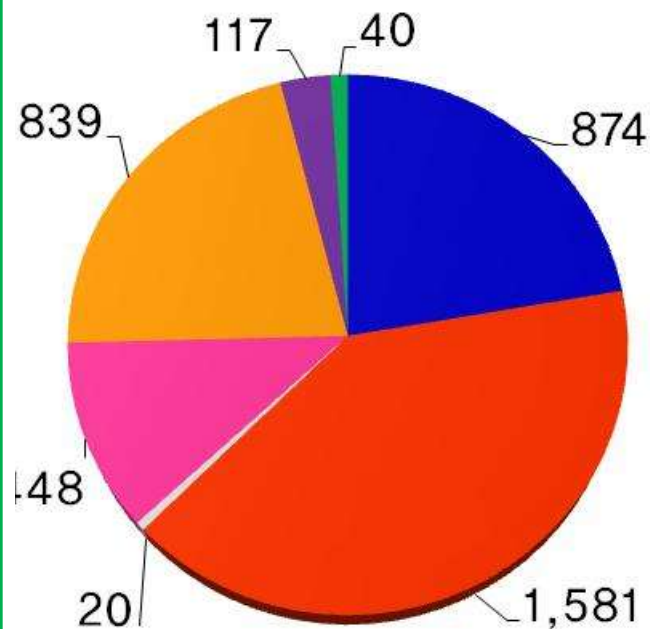
2) 연도별 학대유형

(단위 : 건)

2007년



2008년



※ 중복표시 <출처:2008 전국 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보고서>

4. 노인학대의 현황

3) 피해노인 동거가족 수

(단위 : 명, %)

가족수	동거가족유형	명수	%
독거(23.1%)	혼자	525	100.0
1명(40.8%)	아들	293	31.6
	배우자	206	22.2
	손자녀	159	17.1
2명(18.9%)	배우자, 아들	127	29.5
	아들, 며느리	124	28.8
	아들, 손자녀	70	16.2
3명(14.9%)	아들, 며느리, 손자녀	228	67.3
	딸, 사위, 손자녀	37	10.9
	배우자, 아들, 손자녀	28	8.3
4명(2.2%)	배우자, 아들, 며느리, 손자녀	42	85.7
	배우자, 딸, 사위, 손자녀	3	6.1
5명(0.1%)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손자녀	2	100.0

〈출처:2008 전국 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보고서〉

노인학대사례 1. 신체적 학대



- 피해노인 : 한 00 (92세, 여)
- 학대행위자 : 구 00(50세, 여, 동거녀)
- 신고자 : 000(58, 남, 피해자의 아들)
- 학대유형 : 신체적학대
- 학대내용
동거중인 며느리가 노모의 머리를 때려 피가 많이 나고 있다고 피해자의 아들이 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음.
- 신고자의 요구사항
신고자는 동거녀가 완전히 분리되어지기를 원함
동거녀로 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고 있는 노모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의뢰

노인학대사례 1. 신체적 학대





노인학대사례 2. 복합적 학대



- 피해노인 : 이00, 황00 (79세,부부)
- 학대행위자 : 이00(46세, 남, 막내 아들)
- 신고자 : 000(50세, 0째 아들)
- 학대유형 : 재정적, 신체적, 언어·정서적
- 학대내용
피해자 부부를 잠을 못 자게 밤새 앓혀 놓고 언어·정서적으로 괴롭히며 경제적으로 돈을 20년간 착취하여 생활하였고 피해자 부부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문을 닫아 동네 경로당에서 잠을 잠.
- 신고자의 요구사항
학대행위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어지기를 원함
학대자의 법적 처벌 원함



노인학대사례 2. 복합적 학대



노인학대사례 3. 자기방임



▪ 피해노인 : 최 00 (74세, 여)

▪ 학대행위자 : 최 00(본인)

▪ 신고자 : 노인돌보미

▪ 학대유형 : 자기방임

▪ 학대내용

신고자는 노인돌보미 종사자로 담당하고 있는 독거 노인중에 전혀 자기 자신을 돌보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거부하고 있는 어르신 이 있다고 본기관에 상담을 의뢰함.

▪ 신고자의 요구사항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도움을 받으려 하지도 않아 건강상태가 매우 걱정이 된다고 본 기관 개입으로 피해자가 자기방임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의뢰함.

노인학대사례 3. 자기방임



5. 노인학대의 유형

○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5. 노인학대의 유형 - 학대행위에 따른 분류

「신체적 학대」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등.



2)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5. 노인학대의 유형 - 학대행위에 따른 분류

언어·정서적 학대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통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 노인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3)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노인학대의 유형 - 학대행위에 따른 분류

「재정적 학대(착취)」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 팔거나,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약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등)을 가로챈다.
-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등.



4)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5. 노인학대의 유형 - 학대행위에 따른 분류

「성적 학대」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를 한다.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 폭행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행위를 한다.
- 물건이나 흥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한다.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을 행한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을 조성한다.



5) 방임 학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노인학대의 유형 - 학대행위에 따른 분류

「방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의치, 안경, 보청기)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외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6) 자기 방임 학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5. 노인학대의 유형 - 학대행위에 따른 분류

자기 방임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함.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함.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 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 받는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7)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5. 노인학대의 유형 - 학대행위에 따른 분류

「유 기」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6. 노인학대시점과 징후 체크리스트

구분	시점	학대징후	체크
신 체 적 학 대	신체에 멍이나 상처유무	머리, 얼굴이나 팔 등 신체 여러곳의 멍자국이 있음	
		엉덩이나 손바닥 화상자국이 있음	
		할퀴거나 꼬집은 자국, 목졸린 자국이 있음	
	멍이나 상처의 설명	말의 앞뒤가 안 맞거나 요구해도 설명하지 않거나 감추려고 함	
		신체적 학대 상황에 대해 회피함	
	노인을 협박하거나 생명에 위협한 흔적이 있는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기물을 파손한 흔적이 있음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협박했다는 표현을 함	
	말의 내용 및 외부지원(서비스)여부	생활지도사에게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함	
		지원(방문 또는 서비스)받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함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가?	방문시 대문 및 현관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음	

- 한 문항이라도 발견시 관리자 또는 센터연락 필요

6. 노인학대시점과 징후 체크리스트

구분	시점	학대징후	체크
언어 정서적 학대	체증증감이 있는가?	갑작스런 체증이 감소되거나 지나치게 야윌	
	태도, 표정에 변화가 없는가?	무기력한 표정, 뭉대로 되라는 태도, 무표정 및 갑작스런 태도변화	
	가족관계에서 소외되는가?	연락 두절, 최소한의 왕래를 하지않음	
	말의 내용이 변화가 없는가?	말하기를 꺼림, 한숨을 자주 쉬거나 “죽고싶다” 등 발언을 자주 함	
	적당한 수면은 취하는가?	불면을 호소함	

1-2개 문항 체크시 : 피해노인 대화 수용, 지지, 격려적상담 제공, 노인의 임파워먼트 필요
3개 이후 : 센터연락

6. 노인학대시점과 징후 체크리스트

구분	시점	학대징후	체크
성적 학대	출혈이나 가려움이 있는가?	생식기의 출혈이 있거나 가려움을 호소함	
	태도, 표정의 변한 곳은 없나?	겁을 내거나 타인의 눈을 피함	
	도움을 망설이는가?	관계자에게 말하기를 주저함	

한 문항이라도 흔적 발견시 센터 연락

6. 노인학대시점과 징후 체크리스트

구분	시점	학대징후	체크
재정적 학대	호소를 하는가?	정부지원금, 연금이 있으나 “돈이 없다” “돈을 뺏겼다” 고 말함	
	수입원에 대해 알고 있는가?	수입원(정부지원금, 연금, 자녀용돈 등)이 있는지 알지못함	
		통장관리를 누가 하고 있으며 통장보관 위치를 모르고 있음	
	생활상태에 문제가 있는가?	자산과 일상생활의 큰 차이가 있음. 먹는 것에도 곤란을 받음	

평소 우려되는 독거노인경우 경제 교육 및 소비자 의식(전화사기 등 사기방지 교육) 필요
2개문항 체크이상 관리자 및 센터 연락

6. 노인학대시점과 징후 체크리스트

구분	시점	학대징후	체크
방임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반복적으로 굶거나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음	
		냉장고에 상한 음식물을 보관하고 섭취함	
	경제적 지원은 하는가?	경제적 능력 없는 노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함	
	서비스는 이용하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안함	

평소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여부확인후 청결 및 영양교육 필요
독거노인 생활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관 연계 필요
3개문항 이상 체크시 센터 연락

6. 노인학대시점과 징후 체크리스트

구분	시점	학대징후	체크
자기 방임	자신을 돌보지 않는가?	노인자신이 치료 받지 않거나 치료행위를 거부함	
		건강, 생활, 환경 등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함	
	자살증후가 예감되는가?	죽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거나 자살 증후가 예후 됨	

스스로의 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생활교육 및 안전교육이 필요
자살 증후를 보이는 경우 특별한 관심 필요 및 센터 연락

7.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실태

국가인권위원회(2002),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노인 인권침해에 관한 시설종사자 목격실태(N=1,260)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노인이 거부한다(48.2%)

목욕시 기저귀 교체 시 신체중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옷을 벗기고 입힌다(32.4%)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 있다(31.0%)

시설입소나 전원의 결정이 노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다(목격률: 22.9%)

거주노인이 시설 입소 전에 이용하던 개인물건(가전,가구,소품 등)을 시설에 가지고 올 수 없다(22.7%)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22.6%)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목격률 : 11.5%)

7.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실태

국가인권위원회(2002),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사례1〉

...그게 성희롱이라고는 믿지 않으며 그저 내가 좋아서 졸졸 따라다니며 손이나 옷을 잡고 말을 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그래온 것이지만,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순간적으로 팔을 꼬집고 비틀어 뿌리친 적이 있다.

(무료양로시설 근무 29세 여자관리직원)

〈사례2〉

...존경 받는 직업이라 생각하고 참고 지내지만, 대변을 실수하여 기저귀를 갈아끼워 드리고 나서 이젠 퇴근하려는 순간 또 그러고 나서 쌍소리를 하시자, 나도 인간이기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내 생활이 허물어지는 순간 이성을 잃고 큰 소리로 짜증을 낸 적이 있다.(유료요양시설 근무 32세 여자관리직원)

〈사례3〉

...습관적으로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다른 노인에게 장난을 거는 할아버님이 있는데 때로는 그 정도가 심해 싸움이 생기곤 한다. 어느 한 분이 항상 문제를 만들어 피곤하게 만들기에 나도 스트레스가 쌓여 그 분의 팔을 잡아 당기며 앞으로 또 이러면 내 는다고 한 적이 있다.(무료요양시설 근무 41세 남성 사회복지사)

7.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실태

유성호,강선아(2006)”시설에서의 노인학대 목격실태와 학대 신고의무자의 처벌에 대한태도

➡ 시설종사자중 26.5%, 지난 1년간 1회 이상 노인학대 목격

목격한 노인학대의 유형
언어,정서적 학대(22.7%),
자기방임(6.1%),
신체적 학대(5.3%)

➡ 노인학대 목격자 가운데 91.4%는 학대를 목격하지만 신고하지 않음
- 피해노인의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
- 가해자에게 학대이유를 알아본 후 중재

➡ 향후 노인학대 신고의지
- “목격 시 신고하겠다” (81.1%)
- “신고하지않겠다” 이유: 학대여부 확인 증거불충분, 신고 후 절차상의 번거로움

8. 입소노인 신체제한 금지조항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절박성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비 대체성 : 그 외에 대체할만한 간호 및 개호 방법이 없는 경우

일시성 : 행동제한이 일시적인 경우

신체적 제한을 가한 경우

신체제한 시간

입소자 상황

그 이유 기록 및 본인과 가족의 확인 필요

8. 입소노인 신체제한 금지조항

3) 시설 내 노인학대 개입 지침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2) 조사와 사정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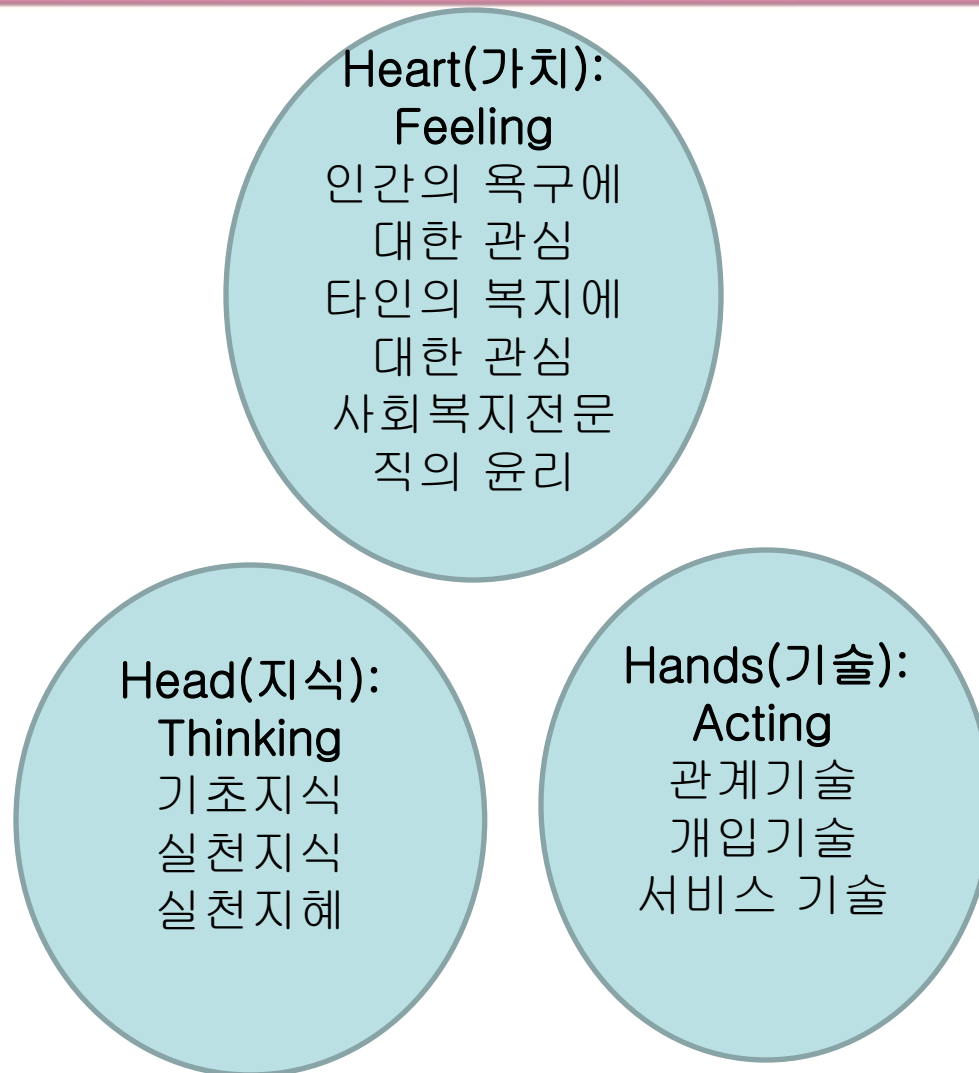


(4) 평가와 사후조치

9. 시설 내 노인학대예방 방안(보건복지부, 2006)

1.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명문화
2.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를 공시
3. 종사자와 생활노인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분기 1회이상 교육
4.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조치
5.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따돌림,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
6.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노인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 강요금지
7. 종사자는 노인에게 수치심, 자존심 상하는 말 금지
9. 종사자는 목욕,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
10.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 제공

1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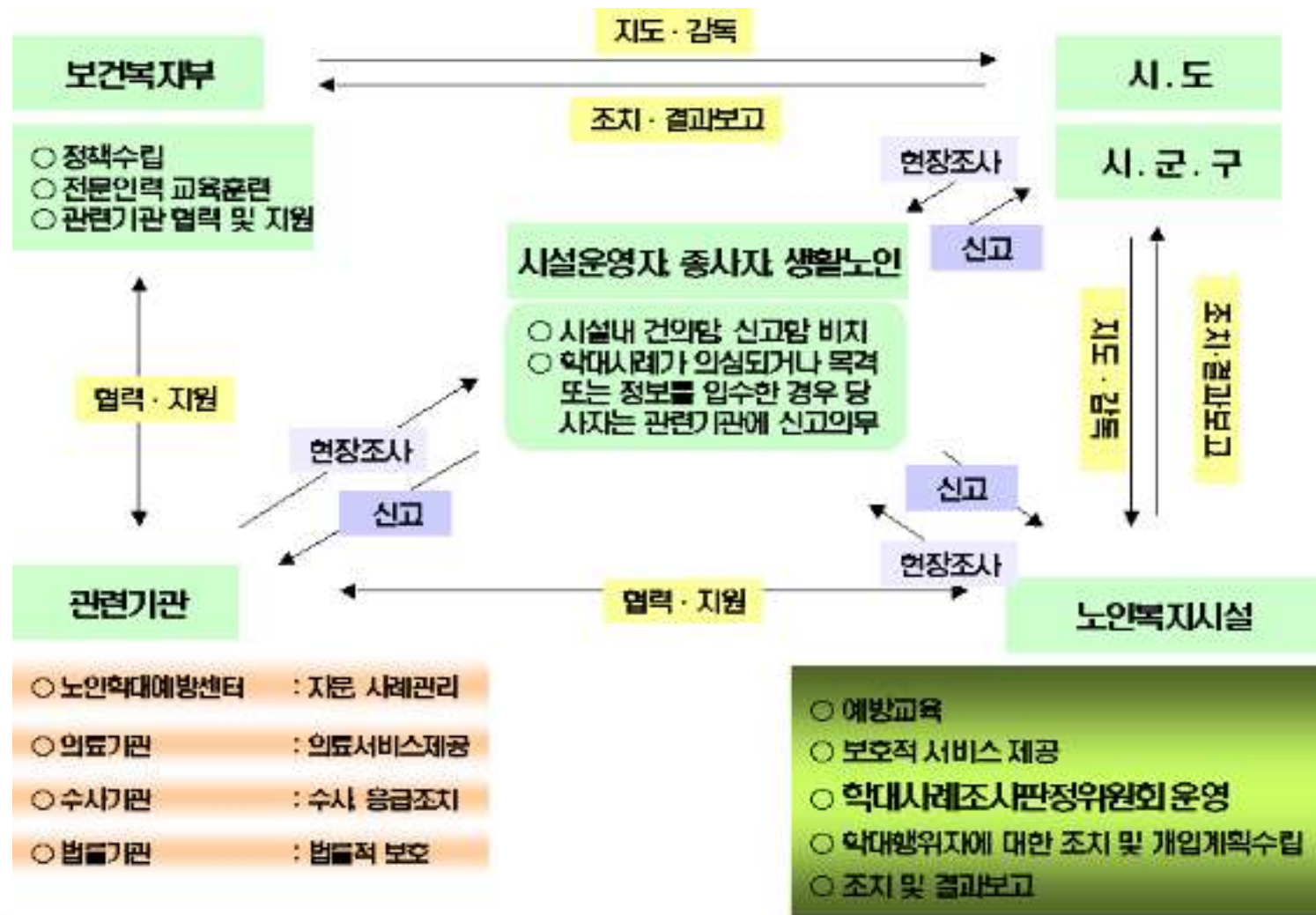


11. 직원에게 요구되는 5가지 자세와 조건(5H)

- 1) 따뜻한 마음(Heart)
- 2) 차가운 머리(Head)
- 3) 우수한 기능(Hands)
- 4) 원만한 인간관계(Human Relationship)
- 5) 심신의 건강(Health)

12. 노인학대처리 절차

1) 처리절차



13. 현장에서 인권침해,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거주자 불만처리, 의견개진 창구마련

: 열린의사소통, 투명한 운영, 서비스질 향상

(예) 의견함”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거주자 및 보호자 간담회 “주민자치회”, “XX가족모임”

“종사자 워크샵”, “애로사항 해결지침 마련”

불만처리과정의 공식화

: 접수/처리/결정, 조치/검토

(예) 불만제로위원회, 서비스품질향상T/F

“기록”에 기초한 과정의 시스템화

: 감정<지성<이성(의지)

교육과”조직문화”를 통한 “습관”화 전략

14. 시설 거주 노인의 인권보호

공동생활, 제한된 자원(인력, 공간 등), 노인 개인, 보호자

시설: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모적인 욕구들을 쏟아내는 환경

이런 환경에선 고객으로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1. 시설종사자의 소진방지(분노조절, stretching, 휴식 등)
2. 서비스 제공의 근거마련(매뉴얼화, 내부규정 등)
3. 고객 및 보호자들과의 의사소통 강화 (참여적 서비스계획 상담, Web camera 설치 등)
 - 혁신적 시설운영(참조: 노인복지시설평가 우수사례)

15.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역할

- 노인의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안정도모
- 노인을 향한 정서적 지지
- 노인의 안전 및 상황에 대한 확인
- 지역자원 등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림
-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지자원 안내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129 (보건복지콜센터)

16. 노인학대 신고

신고자 관련사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당한 사람이나 발견하는 경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①항).

신고할 때는 어르신의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을 설명, 상황의 위급성 / 비위급성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등을 설명한다.

- 신고는 연중 무휴 24시간 언제든지 1577 - 1389, 국번 없이 129, 또는 061) 281 - 2391와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등을 통해 신고접수.

17. 노인학대 신고

2.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함.

3. 신고자의 권리

– 신고자의 신분보장(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하지 않음과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상담일지는 비공개 원칙).

* 상담자는 상담의뢰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

18. 노인학대 신고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제2항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9. 신고, 상담 방법



기관
직접내방

휴대전화이용시
061) 281-2391

1577-1389



하당신흥동사무소
왈츠 사이

일반전화 이용시
1577-1389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남 목포시
상동 970-8번지

빨리 구해주세요

20. 노인학대 금지 행위 및 처벌기준

노인학대 금지 행위 및 처벌기준 노인복지법(제39조 및 제55조)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제55조의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제55조의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제55조의 3)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제55조의 3)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제55조의 4)



21. 신고방법

1) 신고접수 시 파악해야 할 정보

신고자 관련정보	피해노인 관련정보	학대행위자 관련정보	학대 관련정보
○ 이름 ○ 전화번호 ○ 현거주지 ○ 피해노인과 의 관계 ○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신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	○ 현재 안전여부 ○ 이름 ○ 나이(생년월일) ○ 성별 ○ 전화번호 ○ 현거주지 ○ 학대내용	○ 이름 ○ 나이(생년월일) ○ 성별 ○ 전화번호 ○ 현거주지 ○ 피해노인과의 관계 ○ 직업/직장 ○ 동거여부	○ 학대유형 ○ 학대정도 및 심각성 ○ 학대지속성 ○ 학대발생빈도 ○ 학대발생일시 ○ 학대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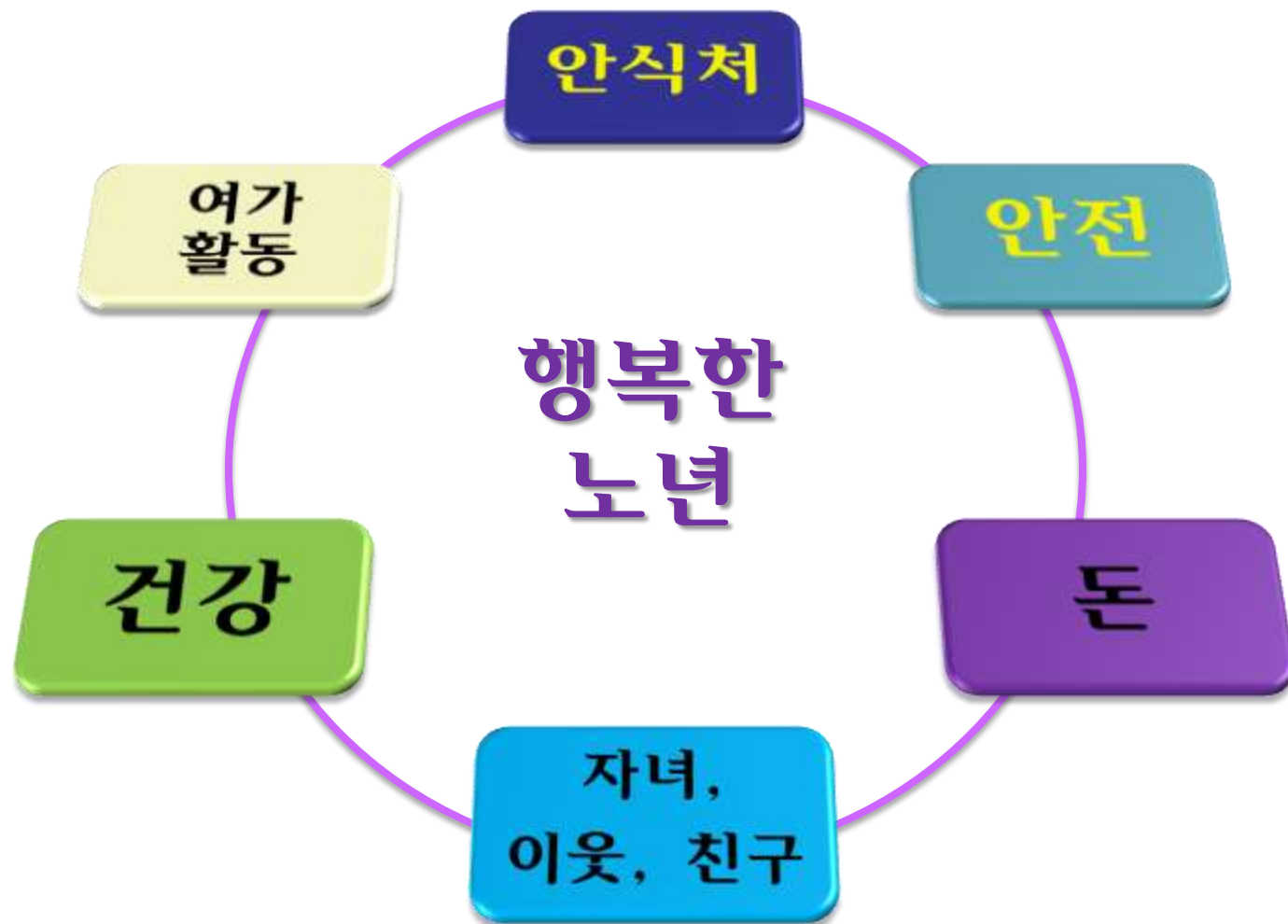
21. 신고방법

2) 신고접수 시 고려사항

(1) 노인학대의심사례로서의 적합성

(2) 사례의 위급성

16. 행복한 노년



16. 행복한 노년

2) 노인 Well-Being을 위한 Tips

-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라.
- 좋았던 일들을 되새겨 보라.
- 항산화제(비타민)를 섭취하라.
- 야외활동을 즐기되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 생선을 많이 먹으라.
-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라.
- 철분을 섭취하라.
- 하루에 8~10잔씩 물을 마시라.
-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신나게 웃어라.



어르신이 행복하면 전라남도가 행복합니다.



신고전화 1577-1389

www.j1389.or.kr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